

광주고등법원 2024. 10. 24 선고 2023나26324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광주고등법원 2024. 10. 24 선고 2023나26324 판결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다247917 판결

광주고등법원 2023. 5. 10 선고 2022나10301 판결

제주지방법원 2022. 1. 20 선고 2020가합12826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C의 관리인 I의 소

송수계인 신용보증기금

원고보조참가인 신용보증기금

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상

피고, 항소인 1. A

2. B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평

담당변호사 박종휘

변론 종결 2024. 8. 22.

판결 선고 2024. 10. 24.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22. 1. 20. 선고 2020가합12826 판결

환송전판결 광주고등법원 2023. 5. 10. 선고 (제주)2022나10301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다247917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A과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7.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38,633,261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A은 원고에게 38,633,26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피고 B은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등기와 2019. 12. 3. 접수 제10627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원고는 환송 후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8행의 "2020. 10. 7."을 "2020. 10. 8."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쪽 1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다.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 등

1)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19. 10. 18. C로부터 그 소유의 전남 구례군 ○ 임야(이하 '이 사건 담보부동산'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3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는데, 이 사건 담보부동산에는 채권자 R조합,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2) 환송 후 이 법원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4. 5. 30. 기준 이 사건 담보부동산의 시가는 886,700,000원이고, 위 2024. 5. 30. 기준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R조합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은 원금 500,000,000원, 이자 106,476,777원, 비용 6,141,500원 합계 612,618,277원이다.

라. C에 대한 회생절차의 진행 등

한편 제1심 변론종결 후인 2022. 1. 19. C에 대한 회생개시결정이 있었고(제주지방법원 2021간회합10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74조 제4항에 따라 C의 법률상 관리인으로 간주된 I이 소송수계를 하였으나, 환송 전 당심 소송계속 중인 2022. 11. 23. C에 대한 회생절차가 채무자회생법 제28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폐지되어 원고가 재차 소송수계를 하였다.』

○ 제1심판결 제3쪽 아래에서 3, 4행 "[인정근거]"에 "갑 제5호증, 환송 후 이 법원의 감정인 S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환송 후 이 법원의 R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를 각 추가한다.

2. 원고의 주장

환송 후 이 법원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4. 5. 30.을 기준으로 원고의 C에 대한 피보전채권액 합계 305,333,261원 중 이 사건 담보부동산의 근저당권을 통해 우선변제권이 확보된 266,700,000원(= 이 사건 담보부동산의 시가 886,700,000원 - 선순위 저당권의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8,633,261원(= 305,333,261원 - 266,700,000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하므로, 원고는 그 한도 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및 가액배상과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3.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범위 가) 관련 법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2) 한편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해당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가 비록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그 채무액이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된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21017 판결,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3) 그리고 사해성의 요건은 처분행위 당시는 물론 채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할 당시(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처분행위를 하였더라도, 그 후에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고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해당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됨에 따라 그 처분행위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하지 않게 되었다면,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은 소멸하고, 그 채무액이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5076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제1항에서 인용한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채무자 C에 대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구상금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하였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거시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이 사건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2019년 말경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 정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이 사건 구상금채권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8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21년경 C와 그 대표자 I을 상대로 이 사건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21. 9. 30. 'C와 I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3,583,329원(= 대위변제금 230,707,285원 + 위약금 1,551,950원 + 대지급금 1,324,094원) 및 그중 대위변제금 230,707,285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0. 10. 8.부터 2021. 2. 22.까지는 연 8%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가단211016 판결), 이후 원고는 2023. 5. 18. 제주지방법원 T 배당절차에서 가압류권자로서 25,715,994원을 배당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라 환송 후 이 법원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4. 5. 30. 기준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액을 계산하면, 원리금 합계 328,173,211원¹⁾에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25,715,994원을 위약금 등 비용, 이자 순으로 법정변제충당²⁾한 결과 305,333,261원(=

대위변제금 230,707,285원 + 지연손해금 74,625,976원)이 된다.

(3) 그런데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19. 10. 18.

C로부터 이 사건 담보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3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고, 이 사건 담보부동산에는 R조합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환송 후 이 법원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4. 5. 30. 이 사건 담보부동산의 시가는 886,700,000원이고, 위 2024. 5. 30. R조합의 피담보채권액은 그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을 초과하는 612,618,277원인바, 이 사건 담보부동산의 시가에서 R조합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공제한 266,700,000원(= 886,700,000원 - 6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는 원고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의 채권자취소권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구상금채권액 305,333,261원에서 위 266,700,000원을 공제한 38,633,261원(= 305,333,261원 - 266,7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이 법원"을 모두 "제1심 법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2. 가. 2)항(제1판결 제4쪽 9행부터 제5쪽 4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들의 선의 항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이 법원"을 모두 "제1심 법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2. 가. 2)항(제1판결 제4쪽 9행부터 제5쪽 4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심판결 이유 제2. 가.항(제1판결 제6쪽 13행부터 제9쪽 7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이 법원"을 모두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 "L"을 모두 "U"으로 고친다.

○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환송 후 이 법원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4. 5. 30."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쪽 아래에서 3행부터 제8쪽 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심 변론종결시 시가 687,997,540원에서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237,377,776원(= 687,997,540원 - 304,619,764원 - 26,000,000원 - 12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앞서 제3. 가. 1). 나)항에서 본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38,633,261원의 한도 내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 A은 원상회복으로서 위 범위 내에서 가액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전득자인 피고 B은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채무자 C와 피고 A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38,633,261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피고 A은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38,633,26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피고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감축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 법원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의영

판사김정민

판사남요섭

별지

1) 331,049,255원[= 233,583,329원(= 대위변제금 230,707,285원 + 위약금 1,551,950원 +

대지급금 1,324,094원) + 대위변제금 230,707,285원에 대한 2020. 10. 8.부터 2021. 2. 22.까지 연 8%의 지연손해금 6,978,105원(= 230,707,285원 × 138일 × 8%) + 2021. 2. 23.부터 2024. 5. 30.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 90,487,821원(= 230,707,285원 × 1193일 × 12%)]

2) 위약금 1,551,950원, 대지급금 1,324,094원, 2023. 5. 18.까지의 지연손해금 22,839,950원에 충당된다.